

제5회 대회 서면심사 방법 및 꾸요 예시 논점

심사 방법

1. 심사 서면

- 민사 분야
 - 총 72개팀 서면 제출
 - 총 10쪽 분량 : 소장 또는 답변서(10장 이내)
- 형사 분야
 - 총 65개팀 서면 제출
 - 총 25쪽 분량 : 변론요지서(15장 이내), 의견서(10장 이내)

2. 심사 절차

- 심사 기준 획정
- 평가단의 평가(1개 답안을 2명의 평가위원이 평가) 후 검증단의 검증을 추가로 실시

3. 심사 기준

- 참가팀에 대한 절대평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경연분야별 본선 진출 상 위 36개팀의 선정을 위한 상대평가에 적합한 기준 설정
- 평가단의 평가방법
 - 경연분야별 주요 예시 논점 : 별지 '주요 예시 논점' 참조
 - 전체적으로는 제시한 논거의 설득력 여하 및 작성한 서면의 작성 목적



충실도 여하에 따라 우열 결정

- 주요 예시 논점에 대한 언급시 기본점수를 부여하고, 설득력 있는
 논거가 제시될 경우 가점 부여
- 논리 구성에 있어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법리를 전개하는 경우, 전체적인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논점을 흐리게 하는 경우 등의 논리 전개는 감점 처리

● 평가방법

-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4단계(A, B, C, D) 상대평가 방식 채택
- 각 경연분야별 B 이상 36개팀이 본선 진출
- 비율표(예시)

민사			형사			표기점수
등급	비율	팀수	등급	비율	팀수	並기召十
А	16.7%	12	Α	18.5%	12	90점
В	33.3%	24	В	36.9%	24	80점
С	33.3%	24	С	30.8%	20	70점
D	16.7%	12	D	13.8%	9	60점
합계	100%	72	합계	100%	65	

- 서면 지연 제출, 분량 초과, 서면양식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대회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 감점 처리

■ 검증단의 검증방법

-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평가단과 협의하여 재평가
 - 평가위원 간 평가점수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
 - 합격선 주변(B와 C)의 서면



● 재평가시 기준

- 평가단의 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평가기준 재확인
- 합격선 주변의 서면에 대하여는 주요 예시 논점 누락 여부, 논거의 충실도, 대법원 판례의 인용 적부 및 이해도, 논리적 흐름, 용어 사용의 정확성 여부 및 명백한 오류 유무, 서면 구성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의 우열 재확인

■ 순위 결정

최종점수 순 [끝]



[별지]

주요 예시 논점

[민사 문제]

- 1. 강제경매로 인해 토지,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성립하는 법정지상권
-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성격
- 법정지상권의 법적 근거
- 2.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여부
- 성립요건 일반
-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
- 신축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 문제
- 토지 및 건물의 동일 소유자 요건의 판단시점
- 법정지상권의 취득시기 및 취득자

[형사 문제]

1. 피고인 최민형

공무원 의제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'해석상 공무원'의 문제), 헌법재판소 2012. 12. 27. 선고 2011헌바117 한정위헌결정의 내용 및 효력,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 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(청탁의 대상, 직무집행과 제3자에 제공된 이익의 대가관계 등에 관한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), 수뢰액 산정의 타당성 등

2. 피고인 차성은

가.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뇌물)의 점 뇌물죄의 주체, 직무관련성 등



나. 알선수뢰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뇌물)의 점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, 연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대금을 취득한 것을 피고 인 차성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

다. 준강간치상의 점

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과 증명력, 준강간죄에 있어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의미, 민서현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

라. 횡령의 점

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양도인이 채권을 수령하여 소비 또는 반환 거부한 경우의 책임, 양수인이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이 채권을 유효하게 추심할 수 있도록 양도인이 협력한다는 신임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, 채권양도통지서가 반송된 후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수령한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

마. 기타

현재 판례의 태도에 따를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의견 및 판례의 변경가능성 등, 축소사실의 인정 [끝]